KB종합통장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KB종합통장(이하 '이 통장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거치식·적립식예금약관, 신탁별약관, 주택채권등록필증약관, 관계법령 및 계좌간자동이체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통장의 구성

이 통장은 보통예금·저축예금·가계당좌예금·기업자유예금 중 하나를 모계좌로 하고, 모계좌와 한통장을 사용하는 연결계좌와 별도 통장을 사용하는 연결계좌로 구성합니다.

제 3 조 자동이체

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이 있으면 은행은 계좌간자동이체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 4 조 관련대출

거래처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해지

① 이 통장의 거래는 모계좌를 해지할 때 끝나며, 이때 거래처는 관련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.

② 거래처가 이 통장과 한 통장으로 이용하는 연결계좌를 계속 거래할 것을 요청할 때는 은행은 별도의 통장 또는 증서를 내줍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국민종합통장, 국민기업종합통장, 국민메디칼통장,빅 맨평생통장, 주택조합통장, 국민사이버통장, 국민미래로통장, 근로 자멀티플통장, 뉴스타트통장, 통일한마음통장, 여성종합통장, 재활 종합통장, 보금자리통장, 국민주택종합통장, 국민종합연금통장 및 구 주택은행의 한가족알찬통장, 기업종합통장은 2002.9.23부터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.